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66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이광희 · 황명선 · 임미애
민병덕 · 김문수 · 허종식
송재봉 · 권향엽 · 양부남
박지원 · 이연희 · 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안정적인 장교 충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3년으로”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단기복무 장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단기복무 장교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임관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u>3년으로</u>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	4. ----- ---- <u>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u> -----.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